의 안 번 호

2101

[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5. 26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5. 26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6. 19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(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)

가. 제안이유

○ 지역의 대중 음악 산업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하고 음 악창작소의 사용료 면제 및 반환 조항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 성을 기하며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일부 용어들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사용료 반환 취소예정일(5일→3일) 변경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설(안 제15조, 별지 제3호서식)
- ○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 (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)

다. 근거법규

○「지방자치법」제153조, 제156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음악창작소의 사용제 면제 및 반환 조항을 명 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 준에 따른 일부 용어들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O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